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3
----------	------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용어(기간)를 명확히하여 시민에게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 나. 긴급복지 조례 위기 상황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용어(기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호)
-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기 상황의 기준 신설(안 제3조제10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1. 10. 12. ~ 2021. 11. 1.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복지정책과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 8호” 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조 대 근
	팀장 직위·성명	희망복지팀장 안 선 진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신 승 우 (790-571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긴급복지지원법</u>」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남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p> <p>1. <u>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2. ~ 9. (생략)</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긴급복지지원법</u>」 제2조제8호-----</p> <p>-----</p> <p>-----</p> <p>-----</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p> <p>-----</p> <p>-----</p> <p>-----</p> <p>-----</p> <p>1. <u>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u></p> <p>2. ~ 9. (현행과 같음)</p> <p><u>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관계법령 발췌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 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부칙 <제15878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